

2013년도 법교육 전문강사 모집 공고

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와 함께 초·중·고등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2012년 한 해 동안 학생자치법정, 학교폭력예방 강의,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대상 법교육, 새터민 대상 법교육 등을 비롯하여 약 1천6백 여회 이상의 법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 법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2013년도에는 더욱 많은 강의를 예정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교육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번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자 중 1차 선발을 통해 '2013년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'을 실시합니다. 본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은 학생, 성인, 다문화 가정,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교육 강의의 전문강사로 한 해 동안 활동 하시게 됩니다.

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※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: <http://www.lawedu.or.kr/>

● 모집인원 : 00명

● 선발기준

[지원 자격]

● 전국대학 법학(로스쿨) 및 사회교육 전공자

- 학사 졸업 및 졸업예정자

- 석·박사과정을 수료 및 졸업한 자 혹은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

※ 우대조건

· 교사자격증 또는 기타 청소년 교육관련 자격증소지자

· 법 관련 교육활동 유경험자

[최종 선발]

● 연수를 수료하고 3회 이상 출강한 자

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12. 12. 21(금) ~ 2013. 1. 6(일), 20:00 까지
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이메일: lrecenter@hanmail.net)

- 지원서 양식 :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[공지사항]의 첨부양식 이용.

※ 메일 제목을 반드시 <2013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(성명)>으로 발송

- 제출서류

● 1차 서류(접수기간 내 제출)

1) 지원서 1부, 강사활동기초조사 1부, 자기소개서 1부

· 본 양식에 맞게 작성할 것 ※ [붙임1] 참조

· 대학과 대학원 등의 학력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람

·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첨부,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

· 주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(거주가 예상되는 지역)를 적어 주십시오

· 자기소개서는 A4 1매 이내

● 2차 서류 (법교육 전문강사 연수 참여시 제출)

1) 재학증명서 및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
·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증명서 모두 제출

2)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

3)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

●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
- 1차 서류합격 발표: 2013. 1. 08(화),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 (www.lawedu.or.kr)

- 문의사항 발생 시 이메일로 할 것.

담당: 강사관리자 조경천 (lrecenter@hanmail.net)

● 2013년도 법교육 전문강사 연수 안내

- 일시 : (1차) 2013년 2월 5일(화) ~ 7일(목),

(2차) 2013년 2월 13일(수) ~ 15일(금), 2박 3일간 진행

(1,2차 중 희망일시를 지원서에 기재할 것)

- 장소 : 솔로몬 로파크(법무부 법교육 연수기관)
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솔로몬로파크
(<http://www.lawedupark.go.kr>)
- 주요 내용 : 법교육의 이해 및 법교육 안내, 실무 및 교수법, 강의 시연 등
- 내부 사정에 따라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연수를 수료하고 3회 이상 출강하신 분에 한하여 법교육전문강사로 위촉

● 연수 수료 후 활동

-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 위촉 및 법교육 전문강사 강사풀(pool) 등록
-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)로 출강하게 됨
- 활동 기간 : 2013년 ※ 강의활동 평가 후 재위촉 가능
- 강의 배정
 - 거주지 및 강의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 교육 강의 배정
 - 타기관의 지급 기준 또는 『법교육 전문강사 강의료 지급기준표』(내규)에 따라 강의료 지급
- 활동우수자는 법무부의 로에듀케이터로 위촉 가능